

## 검사결과 검사비용 지원제외 대상 물품

구 분	검사결과		
	구분	번호	위반사항
제3조제1항 제1호 물품 (관리대상 화물)	1. 검색기검사	1-①	신고사항 이외의 물품 혼입
		1-②	품명상이
		1-③	수량(중량)과다
		1-④	수량(중량)부족
		1-⑤	판독불가(고밀도, 수분)
		1-⑥	판독불가(혼적화물)
		1-⑦	의뢰자에게 통보
		1-⑧	기타 개장검사가 필요한 경우
		1-⑨	타기관 이첩(원자력안전위원회 등)
	2. 즉시검사 (검색기검사 후 개장검사 포 함)	2-①	안보위해물품, 금지품 위장수입 적발(고발의뢰)
		2-②	품명위장·타물품혼입밀수(고발의뢰)
		2-③	위험물품·검역물품 등 적발(고발의뢰)
		2-④	수량·중량 과부족(고발의뢰)
		2-⑤	상표권등 지적재산권 위반 혐의물품(고발의뢰)
		2-⑥	원산지 표시 위반(고발의뢰)
		2-⑦	원산지표시위반(미표시등 보수작업대상)
		2-⑧	적하목록 기재오류(품명, 수량 등)
		제3조제1항 제2호 물품 (부두직통 관화물)	1. 품목분류 위반
1-②	내국세 해당품목으로 세번변경(통고처분, 고발의뢰)		
2. 수량중량상이	2-①		수량·중량 과·부족(통고처분, 고발의뢰)
	2-②		무단반출(통고처분, 고발의뢰)
3. 세율(액) 적용 위반	3-①		동일세번내 고세율로 변경(통고처분, 고발의뢰)
	3-②		동일세번내 내국세 부과(통고처분, 고발의뢰)
4. 관세감면·분 납 적용 위반	4-①		감면불허(통고처분, 고발의뢰)
5. 가격신고 위반	5-①		가격·운임·보험 등 누락과포 과세(통고처분, 고발의뢰)
6. 품명위장	6-①		수입금지품 위장수입
	6-②		미신고물품 위장수입
7. 세관장확인 사항 위반	7-①		세관장확인대상으로 변경(동일세번)
	7-②		세관장확인대상으로 변경(세번변경)
	7-③		수입요건확인서류 허위구비(고발의뢰, 통고처분)
	7-④		수입요건확인서류 미구비(고발의뢰, 통고처분)
8. 국민건강사 회안전 적발	8-①		마약류 적발(고발의뢰)
	8-②		총포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(고발의뢰, 통고처분)
	8-③		총포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(통관보류 등 기타조치)
	8-④		국민건강·사회안전 집중관리 품목 적발(고발의뢰, 통고처분)
	8-⑤	국민건강·사회안전 집중관리 품목 적발(통관보류 등 기타조치)	

구 분	검사결과		
	구분	번호	위반사항
	9. 원산지표시 위반	8-⑥	기타 국민건강·사회안전 등 침해물품 수입(통관보류_통관제한)
		9-①	원산지 미표시
		9-②	원산지 허위표시
		9-③	원산지 오인표시
		9-④	원산지 표시 부적정
		9-⑤	원산지 표시 손상
	10. 품질 등 허위·오인표시	9-⑥	원산지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
		10-①	허위표시 (통관보류_통관제한)
	11. 상표권 위반	10-②	오인표시 (통관보류_통관제한)
		11-①	위조상표 부착물품 수입(통고처분, 고발의뢰 또는 통관제한)
	12. 기타 지적재산권 위반	11-②	상표권 침해(진정상품)(통관제한)
		12-①	상표권 이외 기타 지적재산권 침해
	13. 협업·분석 검사	13-①	불법제품(미인증, 허위표시, 미표시, 기타위반표시)
		13-②	불량제품(부적합제품)
		13-③	유해성분기준치 초과
		13-④	인증결과 고발의뢰(통고처분 포함)
14. 방사능 검사(표면 방사선량을 측정)	14-①	방사능검사에 의한 유해물품 적발(통관보류_통관제한)	
15. 수리 후 분석 및 품목분류 질의	15-①	수리후 분석의뢰 또는 품목분류 질의	
16. 정밀검사	16-①	파괴검사에 의한 유해물품 적발(통관보류_통관제한)	
	16-②	비파괴 검사에 의한 유해물품 적발(통관보류_통관제한)	
제3조제1항 제3호 물품 (수출적재지 검사화물)	1. 품목분류 상이	1-①	세 번상이(환급대상)
	2. 수량·중량 상이	2-①	수량·중량 과(부)족(고발의뢰)
	3. 원산지정위반	3-①	원산지 허위 표시
		3-②	원산지 오인 표시 및 표시 부적정
	4. 지적재산권위반	4-①	위조 상표 수출(고발의뢰)
		4-②	상표권 침해
		4-③	저작권·의장권 등 위반(고발의뢰)
	5. 위장 수출	5-①	수출금지품 위장 수출
		5-②	미신고물품 혼입 및 위장 수출
	6. 현품검사 곤란	6-①	수출신고 수리전 적재로 현품검사 곤란
6-②		미제조로 현품검사 곤란	
7. 전략물자 수출 통제 위반	7-①	전략물자 수출통제 규정 미준수	
8. 중고차량 불법수출 위반	8-①	차대번호 상이 신고	
	8-②	기수출 차량 신고 오류	

구 분	검사결과		
	구분	번호	위반사항
		8-③	도난·범죄 차량 적발
	9. 수리 후 분석	9-①	정확한 품목분류 곤란 또는 성분분석을 요하는 물품
	10. 신고 오류	10-①	신고물품 일부(전체) 누락 신고 오류
	11. 거래구 분 정정	11-①	원상태 수출 부적정
		11-②	계약상이 수출 부적정
	12. 스마트폰 불법수출 위반	12-①	도난/분실 스마트폰 적발(5개 미만)
		12-②	도난/분실 스마트폰 적발(5~9개)
		12-③	도난/분실 스마트폰 적발(10개 이상)

※ [별표]1 제3조제1항제1호 물품의 검사결과 “1-⑨”, 제3조제1항제2호 물품의 검사결과 “8-③”, “8-⑤”, “15-①”, 제3조제1항제3호 물품의 검사결과 “9-①”의 경우에는 검사비용 지급을 보류한 후 최종 검사결과가 [별표]1의 검사결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(당초 검사결과 포함) 검사비용을 지급한다. 또한, 제3조제1항제1호 물품의 검사결과가 “2-⑦”, “2-⑧”인 경우에는 결정된 검사비용 지급금액의 50%를 감액하여 지급한다.